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서범수의원안)	2

I. 개요

1.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4.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4년 4월 시행)되어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서범수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 ○ 대상: 기업도시개발 구역, 지역개발 사업구역, 새만금지구, 여수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 ○ <u>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날로부터 5년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에 추가</u> ○ (현행과 같음)
☐ 감면세액의 추정등 (제121조의17) ○ 대상: - 기업도시개발 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 감면세액의 추정등 (제121조의17) ○ <u>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폐업한 경우 추가</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

* 서범수의원안 2024. 6. 4. 제출(의안번호 126)

☐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임. 최근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동 법률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됨.¹⁾ 현재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가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각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임.

동 법률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으로 ① 디지털혁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부처별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검토, ② 국공유지 사용료, 부담금 등의 감면, ③ 임시허가·실증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²⁾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3. 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5조

□ 개정안은 특구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비수도권에 성장거점을 육성하여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효과를 지향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19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전국 인구밀도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22년 기준 52.5%로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수도권 인구 및 인구밀도 현황]

(단위: 천명, 명/km²)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전국	51,765	516	51,836	516	51,745	515	51,628	514	51,713	515
수도권	25,851	2,179	26,021	2,193	26,054	2,195	26,053	2,195	26,190	2,206

자료: 통계청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1,903	1,927	1,945	2,076	2,166
수도권	993	1,003	1,026	1,097	1,137
수도권 비중	52.2%	52%	52.7%	52.8%	52.5%

자료: 통계청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들의 특구입주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행 세제지원 혜택 등을 바탕으로 입지 및 고용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감면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이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이전기업³⁾·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⁴⁾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기(既) 운영 중임.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⁵⁾,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등 고용·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둘째,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세액감면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데, 세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개세주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최저한세의 취지에 비추어 최저한세를 적용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⁶⁾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삭제

셋째, 과도한 특구 지정 및 이를 수반하는 세제지원으로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특구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이 꼽혔고, 중앙정부는 효율성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특구의 운영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⁷⁾.

분절된 특구의 지원으로 통합적·유기적 특구제도가 운영되지 못해 도심융합특구가 관련 기업들의 실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이하 생략)

7)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24.7.23.